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최성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김백용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 B,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0,011,157원 및 위 각 돈 중 29,321,523원에 대하여 202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F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1. 12. 22. 접수 제84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61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61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 6. F에게 9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8.9%,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하여 대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8차전16678호로 F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3.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소외 회사에 82,814,897원 및 그중 80,581,843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0.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22. 5. 2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2. 6. 14. F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23. 1. 20.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58,643,047원, 양수전 이자 16,025,881원, 양수후 이자 5,353,386원을 합한 80,022,314원이다.

다. F은 2018. 10. 1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1792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21. 12. 2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1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84252호로 2021. 1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은 2023. 2. 22. 사망하였고, 피고 B, E는 F의 부모로써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23. 5. 16. 대전지방법원 2023느단27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B, E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 상속지분에 따라 각 40,011,157원 및 위 각 돈 중 29,321,523원에 대하여 202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이 2018. 10. 17.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F의 일반재산에 감소를 초래하게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15 지분에 관하여 해당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피고 C은 피고 B,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해당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보전채권, 망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F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으로, 2018. 10. 22. 국세청에 세금 5,870,650원 및 4,848,440원을 지급하고, 2018. 10. 29. H에 6,040,431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I에 14,938,98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J에게 4,000,000원, 2018. 10. 31. K에게 2,000,000원, L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한 점, F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한 후로 화물차를 이용한 운수업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이 아닌 F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더 이상 위 운수업이 유지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양수금 채권도 부산지방법원 2018차전16678호 지급명령에 따른 인용금액보다 감소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로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F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아산시 답 1740㎡
2. 충청남도 아산시 답 2965㎡ 끝.

